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
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결산검사 의견서

순천시장 귀하

2021년 5월 4일

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.

우리의 결산검사는 순천시 결산서와 재정집행 등에 대한 지방회계법의 관 계법령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여부 검토와 순천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, 금 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의 최종의견으로는 순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, 성과보고서, 금고의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 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 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.

순천시 결산 검사 위원

대표위원 박 재 원

위 박 병 희 원

김 태 호 위 원

위 원 한만호

워 홍 금 표

2021년 5월 28일

순천시의회

